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410
----------	-----

2019년 3월 6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년 2월 1일, 여명 의원

2. 회부일자 : 2019년 2월 7일

3. 상정일자

○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19년 3월 6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여명 의원)

1. 제안이유

○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 등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등의 해소를 위하여 탈북학생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탈북학생 지원 관련 정책수립을 위해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함(안 제4조).
- 학업지원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제공함(안 제5조).
-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예산의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 받은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9조).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9년 2월 1일 여명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410호로 발의되어 2019년 2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 등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등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탈북학생¹⁾ 현황 및 조례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1) 법률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이고, 북한 또는 중국 등에서 태어나 한국에 입국한 후 학교에 재학 중인

○ 현재 탈북학생들은 가정, 사회, 학교에서의 문화적 차이, 북한 혹은 제3국의 학교와 한국 학교 운영 방식의 차이 그리고 교수학습에 사용되는 용어의 차이 등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학교적응과 학습부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²⁾

2018년 기준으로 서울에 재학 중인 탈북학생은 총 589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³⁾ 많은 탈북학생이 있으나, 현재 이들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 제정 등 체계적 지원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⁴⁾입니다.

[표-1] 서울시 관내 탈북학생 현황

(단위 : 명)

연 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계
2017	206	137	211	554
2018	211	125	253 (기타학교 91명 포함)	589

[표-2] 서울시 탈북학생 출생지 현황

(단위 : 명, %)

연도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학교		계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학생수	비율
'16	북한출생	101	38.7%	91	55.8%	162	80.6%			354	56.6%
	중국 등 제3국출생	160	61.3%	72	44.2%	39	19.4%			271	43.4%
'17	북한출생	76	36.9%	72	52.6%	144	68.2%			292	52.7%
	중국 등 제3국출생	130	63.1%	65	47.4%	67	31.8%			262	47.3%
'18	북한출생	46	21.8%	67	53.6%	99	61.1%	44	48.4%	256	43.5%
	중국 등 제3국출생	165	78.2%	58	46.4%	63	38.9%	47	51.6%	333	56.5%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를 탈북학생이라 함.

2)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 「탈북청소년교육지원센터 운영 사업 9차년도 결과보고서」, 2018. 3.

3) 한국교육개발원 2018년 4월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2,805명의 탈북학생 중 23.2%가 서울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며, 탈북학생은 경기, 서울, 인천 순으로 대부분 수도권에 분포되어 있음.

4) 탈북학생 지원조례 제정 교육청 : 경기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 5개 시·도교육청.

○ 그러나 현재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조례의 유무와 별개로 탈북학생의 교육적응 및 학업성취를 위해 적지 않은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바, 2019년 현재 교육부⁵⁾ 특별교부금 6억 87백만원, 교육청 자체예산 27백만원 등 약 7억 1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탈북학생 적응교육을 위한 맞춤형 교육 강화사업,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사업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표-3] 서울시 탈북학생 지원 예산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17	2018	2019
탈북학생 맞춤형교육강화	542,000	323,000	337,000
탈북학생 진로직업교육 내실화	75,000	105,000	87,000
탈북학생 교육지원 기반 공고화	297,000	230,450	290,670
총 예산액	914,150	658,450	714,650
특교	909,000	651,300	687,300
자체	5,150	7,150	27,350

○ 또한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초·중·고등학교별 맞춤형 멘토링과 토요일 점 방과후학교 등의 참여 공모형 사업으로 탈북학생들의 학습부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탈북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학생 1인당 80만원의⁶⁾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은 그간 교육청에 의해 추진되어온 탈북학생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학교적응력 제고와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5) 교육부 2019년 교육소외계층 지원사업 계획,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 예산을 시·도별 탈북학생 수를 고려하여 17개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시·도교육청에서는 탈북학생 재학 학교에 재교부, 교육부 교육기획보장과-4094(2018.9.19.).

6) 교육부의 예산 산출기준 “(전년도 기준 탈북학생 수) X 80만원(1인당) + 인원 증가분 반영”교부하고 있음.

1) 조례안의 구성

- 동 조례안은 총 1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책무에 대해 총칙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탈북학생 교육지원 실태조사, 안 제5조는 학업지원 정보 제공, 안 제6조 및 제7조는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안 제8조는 위탁기관 재정지원, 안 제9조는 탈북학생 교육지원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동 조례안의 구성은 자치법규 입안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전체적으로 구성과 조문 체계가 적정하고 상위법령에도 저촉되지 않아 조례 제정에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교육지원기관의 위탁교육에 관한 의견(안 제6조)

- 동 조례안 제6조에서는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학습부진 해소를 위해 대안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탈북학생이 원할 경우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이는 일반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탈북학생들이 자신의 특성과 형편에 맞는 맞춤형 대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학습의 문호를 확대함으로써 탈북학생들의 학업 적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 학업중단 예방에 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⁷⁾

3) 재정지원에 관한 의견(안 제8조)

- 안 제8조는 교육감이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한 기관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현재까지 서울시교육청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대안교육기관을 위탁한 사례가 없어 별도 예산지원은 없으나 향후 탈북학생의

7) 2017년 4월 기준 서울시 연도별 탈북학생 학업중단 현황(2016년 19명, 2017년 16명).

교육지원 사업이 확대될 경우를 대비한 조항으로 이해되는 바, 서울시 교육청에서는 타시도의 위탁 사례나 관련 법인이나 단체의 현황 등을 조사하는 등 합리적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그 밖의 사항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생각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도 동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별도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603, 2019. 2. 15.)⁸⁾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8) 서울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2019.2.15.)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탈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탈북학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의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6세 이상 만25세 미만의 청소년을 말한다.
2. “탈북학생 교육지원기관”이란 탈북학생의 남북한 교육 차이,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 및 제3국에서의 출생으로 인한 언어 문제 등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탈북학생에게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의 학업결손에 따른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제공)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

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를 탈북학생에게 맞춤형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지원기관의 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을 교육지원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탈북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교육지원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구축)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탈북 청소년 지원기관, 대안교육기관 등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교육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